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3322
등록일자	2015.10.7.
결재일자	2015.10.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속대리	
이경희	김회동	송필석	김용운	10/08 주윤중	
협조자					



- Plan your actions and focus on solutions -

2015년 하반기 체납징수 포커스(FOCUS) 계획

Vision

2015년 세입목표 달성 & 시세 인센티브 2관왕

세입목표액 : 22,109백만원 (시세 18,755백만원 + 구세 3,354백만원)

- ▶ 2015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상반기에 이은 하반기 최우수구 목표 (2관왕)
- ▶ 체납징수 특별정리기간 설정 (2015.10월 ~ 12월) → 선택과 집중의 체납 관리

추진내용

체납징수 관리 강화

- ◆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관리 강화
- ◆ 체납고지서 및 예고문 (영치,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일괄 발송

강력한 행정제재

- ◆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요구

선택과 집중 기획징수

-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대 실시
-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기획징수 추진

2015. 10. 7.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2015년 하반기 체납징수 포커스(FOCUS) 계획

- ◆ 2015년 하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 목표 (2관왕)
- ◆ 체납액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정리기간 설정 (2015.10월~12월)

※ 추진근거 : 구청장방침 1.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세무관리과-1791, 2015.1.23.)
 2. 2015년 38체납기동대 T/F팀 운영계획 (세무관리과-1739, 2015.1.23.)

1 추진배경

- 2015년 상·하반기 인센티브 각각 평가
 - 9월 말 현재 구세 체납 징수액 40억원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122%) 했으나, 시세 체납징수액은 목표대비 진도율 83%로 상대적으로 부진
- 내실있는 체납자 관리로 체납 규모 최소화
 - 금액이 고액일수록 발생연도가 오래될수록 체납징수 가능성 낮음

2 체납 징수현황

2015년 현황 (2015.9.30.현재 가집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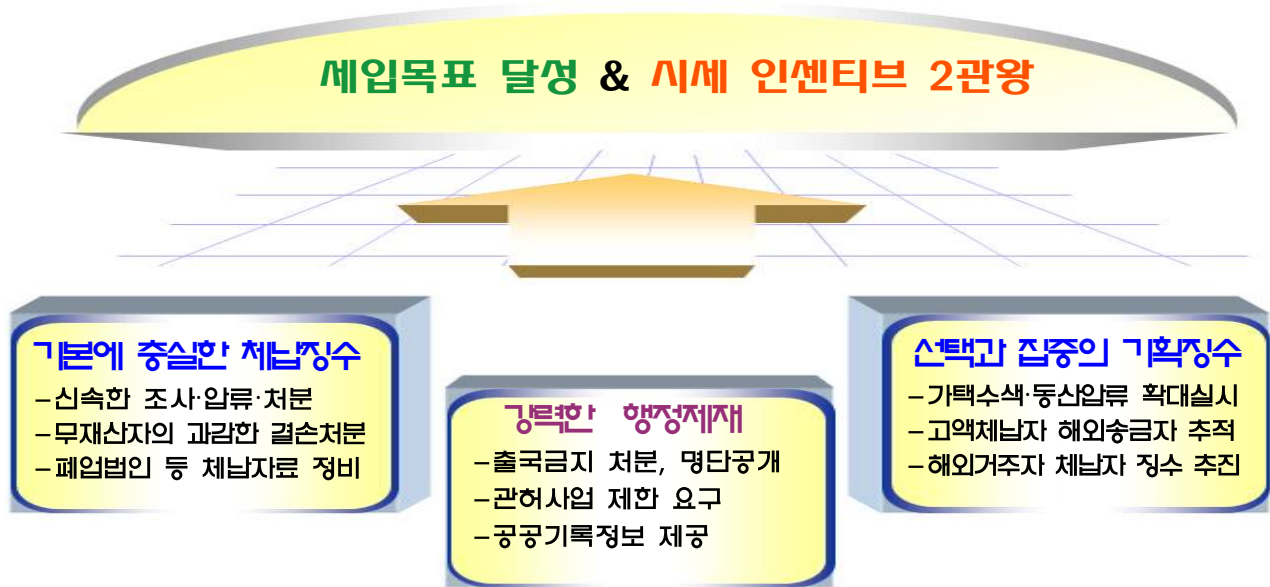
구 분	징수목표액	징수액	전년동기 징수액	전년대비 증감액	목표대비 진도율	비 고
합계	22,109	19,783	16,920	2,863	89.5%	
시세	18,755	15,685	14,036	1,649	83.6%	
구세	3,354	4,098	2,884	1,214	122.2%	

▶ 2015. 9월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2,863백만원** ↑ **초과 징수**

3

추진방향 및 일정

□ 추진방향



□ 추진일정

채납징수 특별 정리	10월	11월	12월
2015년 하반기 채납징수 포커스(FOCUS) 계획 수립	—		
채납고지서 일괄 발송	—	—	
영치예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문 발송	—		
고액채납자 해외송금자 추적 및 해외거주자 채납처분 예고		—	
출국금지 · 부동산 공매		—	—
공공기록정보 제공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불납결손 처분	—		
채납차량 번호판 영치	—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보유재산 압류 처분	—	—	
금융재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	—	
고액 · 상습 채납자 명단공개			—

4

세부 추진계획

1.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관리 강화

□ 부동산 공매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로 조세 채권 실현
 -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체납징수에 한계
 - 납부의식 부족한 자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를 통한 강력한 징수
- 추진일정
 - 2015. 10. 16. ~ 11. 15. 부동산 압류자료 전수조사 및 실익 검토
 - 2015. 11. 16. ~ 부동산공매 예고통지서 발송
 - 2015. 11. 20. ~ 11. 30. 반송우편물 공매예고 SMS 발송
 - 2015. 12. 10. ~ 부동산공매 대행 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및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번호판 영치

- 영치 Day 지정 (매주 화요일)
 - 매주 화요일은 체납징수1반장(세무관리과장) 및 38세금징수팀장을 시작으로 38세금징수팀 직원 5명 영치단속조에 추가 편성 일제단속
 - ▶ 우선 영치반 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조정
- 단속대상
 - 자동차세가 체납(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되어 있는 차량
 - 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 영치 예고 :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
-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 체납규모 (2015.8월말) : 총 1,022억원 (시세 884억원, 구세 138억원)

발송 월	구분	대상인원 (명)	체납액 (억원)	비고
2015. 10월	체납 고지서	83,675	602	2015년 상반기 기준
	번호판 영치 예고	5,517	102	
	관허사업 제한 예고	1,404	120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	1,983	228	
2015. 11월	체납 고지서	104,970	834	2014년 기준
	해외거주자 체납처분 예고	328	11	

□ 무재산자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년 체납규모 증가로 효율적인 체납관리 필요

- 지방세 체납자 중 무재산자 이거나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

○ 평가지표 변경(불납결손 금액 20%반영)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필요

- 2015년 상반기 : 시세 14억원, 구세 38억원 불납결손

○ 하반기 불납결손 목표액 설정 : 30억원

- 대상자 : 50만원 이상 무재산 체납자 (9,788명, 29,059백만원)

▶ 사후 년 2회 재산조사, 소유재산 발견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재산압류 실시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 【결손처분】

□ 체납자료 지속 정비

○ 주민등록 오류자료 정비

○ 폐업 법인 및 반송분 확인 후 세무종합시스템 상담조사 입력 및 고지제한

○ 예금, 환급금 등 압류 후 즉시 추심 및 압류해제 등 전산자료 정비

2. 강력한 행정제재

□ 출국금지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 압류,공매 등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 해외이전 및 해외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

○ 검토대상 (5천만원 이상 유효 여권소지자)

- 재산현황 및 우선채권 여부 조사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외 체류사항 조사
- 출국금지 요청대상자 관련 양식 준비

○ 추진일정

- 2015. 11. 1. ~ 11. 15. 체납자 기채권확보 여부 등 자료 조사
- 2015. 11. 16. 출국금지 예고문 발송
- 2015. 12. 10.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제출

○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출국금지 요청 등】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포함)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추진일정

- 2015. 4. 23.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개최 (명단 공개대상 70명 선정)
- 2015. 4. 27.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예고 (신규발생 22명, 22억원)
- 2015. 5. 1. ~ 2015. 10. 31.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 안내 (6개월)
- 2015. 11. 30.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개최 (명단공개 최종 대상 확정)
- 2015. 12. 14. 명단공개 (12월 셋째주 월요일)

▶ 공개항목 : 체납자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세목, 납기, 체납요지 등

▶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구청 게시판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공공기록정보 제공

○ 추진대상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자

○ 추진일정

- 2015. 10. 1. ~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자료 제공 계획
- 2015. 10. 16. ~ 공공기록정보 자료 제공 안내문 발송
- 2015. 10. 20. ~ 10. 31. 반송우편물 SMS 발송
- 2015. 11. 1. ~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제공

○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

□ 관허사업 제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취소

- 진입제한 :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허가 등을 제한
- 사업퇴출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

○ 추진일정

- 2015. 10. 8. 자료발취 및 대사 (9월말 소인후)
- 2015. 10. 9. ~ 11.15. 제한대상자 중 불복청구, 분납자 등 제외 후 대상자확정
- 2015. 11. 16. ~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예고문 발송
- 2015. 11. 20. ~ 11. 30. 수납안내 및 납부 유도
- 2015. 12. 31.限 수납확인 후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3. 선택과 집중의 기획징수

□ 고액채납자에 대한 해외송금자 추적조사

- 채납자 명의인 해외송금관련 요구정보 일체 요구 (시중은행)
 - 추진대상 : 3천만원 이상 부동산 미보유 고액채납자
- 해외송금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고발조치
 - 지방세 채납 납부 촉구안내 및 해외송금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 채납자 재산 등 실태파악 후 의도적인 납세회피자에 대한 고발조치

□ 해외거주 채납자 징수관리

- 해외거주채납자 조사 강화 및 징수관리 체계 정립
- 문제점
 - 국내법이 외국에 적용되지 않아 납부회피 등으로 악용
 - 해외이주 이후는 대부분 무재산이고 행정제재 대상 범위에서 벗어나 납부의지 결여
- 추진대상 : 해외거주 채납자 448명
 - 국내외 거소지로 납부촉촉안내문 발송 등 징수독려 추진
 - 국내 보유재산 일제조사 후 보유재산 확인시 압류 및 공매 추진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대

- 본인 명의의 등기·등록된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없는 호화 생활자 등에 강력한 강제수단 필요
 - 재산은닉·위장이혼 등 채납자 추적 조사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자와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 생활실태 조사를 통한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
- 추진대상
 -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채납자, 재산은닉 혐의자, 해외출입국 빈번자 등
 - ▶ 고액채납자 생활실태 조사 철저(가족관계, 거주지, 직장, 거주형태, 사업장 등)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압류의 요건】 및 제147조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5

기대효과

- 집중적인 체납징수 관리로 2015년 세입목표 초과 달성
- 2015년 하반기 체납 시세 인센티브 평가 최우수구 연속 수상 (2관왕)
-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 끝.